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18 발의연월일: 2025. 1. 10.

발 의 자: 안태준 · 복기왕 · 맹성규

임호선 · 이광희 · 채현일

유호중 • 소병훈 • 박용갑

박해철 • 이연희 • 이병진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 「상법」에서는 여객의 사고나 항공 연착, 수하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함에 있어 국제운송구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있음.

이에 2024년 12월 28일부터 동 협약에 의하여 상향 조정된 항공운 송인의 책임한도액을 현행법상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운송인의 책임한 도액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운송인의 무과실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

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에서 15만1천880 계산단위로 상향하고, 여객 연착 시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에서 6천303 계산단위로, 수하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 시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에서 1천519계산단위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 시 1킬로그램당 19 계산단위에서 26 계산단위로 각각 상향 조정함(안 제905조, 제907조제2항본문, 제910조제1항본문 및 제915조제1항본문).

법률 제 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만3천100"을 각각 "15만1천880"으로 한다.

제907조제2항 본문 중 "4천694"을 "6천303"으로 한다.

제910조제1항 본문 중 "1천131"을 "1천519"로 한다.

제915조제1항 본문 중 "19"를 "26"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인의 배상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송인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그 한도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05조(운송인의 책임한도액) ①	제905조(운송인의 책임한도액) ①		
제904조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의 금액까	<u>15만1천880</u>		
지는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			
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② 운송인은 제904조의 손해	②		
중 여객 1명당 <u>11만3천100</u> 계	<u>15만1천880</u>		
산단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			
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배상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907조(연착에 대한 책임) ①	제907조(연착에 대한 책임)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인의 책	②		
임은 여객 1명당 <u>4천694</u> 계산	<u>6천303</u>		
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			
만, 여객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			
발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운송			
의 경우에는 여객 1명당 1천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			
다.			

③ (생략)

제910조(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 액) ① 제908조와 제909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여객이 운송인에게 위탁수하물을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 받을 때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신고가액이 위탁수하물을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의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② (생략)

제915조(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 액) ① 제913조와 제914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킬로그램당 19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하되, 송하인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운송의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③ (현행과 같음	-)	
제910조(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
액) ①		
<u>1천51</u>	9	
② (현행과 같음	-)	
제915조(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
액) ①		
<u>26</u> -		

1킬로그램당 15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신고 가액이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의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